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3
----------	-----

2019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상진 의원(찬성자 11명)
- 나. 제안일 : 2019년 1월 31일
- 다. 회부일 : 2019년 2월 7일
- 라. 상정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8.12.24)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종전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 2. 12. ~ 2. 19.)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등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8.12.24.) 되면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 경감율의 적용 범위(취득세 20%, 재산세(도시 지역분) 50% 限)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법 제38조제4항제2호→제38조제4항1호 본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조례안 주요 내용 >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종전	개정 [2018. 12. 24. 일부개정]
<p>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p> <p>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p> <p>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p>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p>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p>⑤ (생략)</p>	<p>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종전과 같음)</p> <p>④ ----- -----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 각각 -----.</p> <p>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나. (현행과 같음)</p> <p>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p> <p>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⑤ (종전과 같음)</p>

- ※ 현행 경감율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2020년까지 연장하고, 2021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38조 제4항 제2호)에 경감률을 직접 규정
- ※ 취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3항), 시·군세(「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율을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최대치를 지속 반영하고 있는바, 복지지출 확대 등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의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운영 등으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감면율 인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세출과 동일하게 예산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12.)

〈전국 종교단체 의료기관 감면율 운영 현황〉 (단위 : %)

구분	취득세 (시·도청 소재지 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서울특별시	20	50
부산광역시	20	50(연제구 등)
대구광역시	20	50(중구 등)
인천광역시	12.5	50(남동구 등)
광주광역시	20	50(서구 등)
대전광역시	20	50(서구 등)
울산광역시	12.5	50(남구 등)
세종특별자치시	40	50
경기도	20(40)	50(수원시 등)
강원도	20(40)	50(춘천시 등)
충청북도	20(40)	50(청주시 등)
충청남도	20(40)	50(홍성군 등)
전라북도	20(40)	50(전주시 등)
전라남도	40	50(무안군 등)
경상북도	20(40)	50(안동시 등)
경상남도	20(40)	50(창원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20(40)	50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58	54	59	57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서울시 종교단체 의료기관 지방세감면 대상 기관〉 ('18.6월말 기준)

대상병원	소재지
(재)능인불교선양원 동양한의원	강남구
(재)원불교서울교구 강남원의원	강남구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전진상의원	금천구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구
삼육치과병원	동대문구
(재)동국한방병원	서초구
(재)원불교서울보화당한의원	종로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3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김상진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 경, 김기대,
김생환, 김용석, 박기열,
송재혁, 이동현, 이태성,
이현찬, 한기영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8.12.24)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종전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